

包裝과 環境政策

EU의 包裝 및 包裝廢棄物 指針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Packaging & Packaging Waste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 지침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이 1994. 12. 20일에 채택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국가간 차이는 환경에 대한 어떠한 충격을 막거나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내국시장의 기능을 확보하고 무역장벽요인 및 역내시장에서의 경쟁 왜곡 및 제한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은 전체 포장량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동 지침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특정 회원국에서 채택한 수단이 동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회원국의 능력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며,

폐기물 감축은 유럽조약이 특히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인이므로,

동 지침은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므로 1985년 6월 27일에 제정된 대인용 액체용기 소비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포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동 지침에서 부여하는 각종 조치는 공정하게 포장재 및 그의 내용물의 품질 및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계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폐기물 정책에 대한 1990년 5월 7일 위원회 결정에서 발효된 위원회의 폐기물 관리전략 및 폐기물 관련 위원회 지침(1975. 7. 15)과 일치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관리에서는 포장 폐기물 방지가 최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으로는 포장 재사용, 재활용, 포장재 폐기물을 다른 형태로의 전환결과 폐기물의 최종 처리대상의 감축을 포함해야 하므로, 과학 및 기술발전이 복구공정에만 집중되어

있으나 재사용은 환경영향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사용된 포장 및(혹은) 포장 폐기물의 회수를 보장하는 역내회원국간의 체제구축을 필요로 한다.

수명주기 평가작업은 재사용, 재활용, 재복구가 가능한 포장간의 분명한 계통체계를 가능한 신속하게 조정해야 함. 포장 폐기물 방지는 지침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회원국간의 우선권을 포함하여 적절한 제재수단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조약취지에 부합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포장재 재사용 체제 및 그러한 체제의 보급을 환경보호에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환경적 관점에서 재활용은 에너지, 1차 원자재 및 폐기물의 최종투기감축 측면에서 재복구의 중요 분야로 간주되어야 하며, 에너지 재복구는 포장 폐기물 재복구의 효율적인 수단이며,

포장재 폐기물의 재복구 및 재활용을 위해 회원국간에 설정한 목표는 회원국간의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고, 경쟁 왜곡과 무역장벽 구축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성과를 획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운용가, 소비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이런 목표를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중기경계선은 전에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두어야 하고, 장기경계선은 좀 더 늦은 단계에서 결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유럽의회 및 유럽회의는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회원국내에서 전에 언급한 생태계 균형목표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 및 평가기법의 발견에 대해 작업중 확보한 실제경험을 검증하고 있다.

목표한계에 미달한 프로그램보유 회원국은 그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 관계에서 동 지침의 목표에 도달토록 수락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는 역내시장의 장애요인을 회피하고 다른 회원국이 동 지침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미도달국의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회원국이 회수, 수집 및 복구체제구축이 필요하며, 이런 체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참여가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품과의 차별, 무역장벽 및 경쟁왜곡이 배제되어야 하며 조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최대한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의 포장마크 발행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조만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장벽, 경쟁왜곡을 피하기 위해 구성성분을 결정할 필수요소와 포장의 재사용 및 재복구(재활용 포함) 특성을 한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포장에서 독성 금속 및 다른 물질 검출은 환경영향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하며(특히 연소시 비산물 및 재 또는 포장지 매립시의 침출물 등) 포장 폐기물에서 독성금속의 제1단계로 독성 중금속 첨가를 방지하고 그러한 물질이 환경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면제사항은 위원회의 의사전행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고도의 재활용 수준이 확보되거나 포장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기능인력의 충원 및 안전문제가 경시된다면 그런 폐기물은 원재료별로 필히 분류되어야 한다.

포장재 제조시의 필요사항은 동 지침이 발효되기 전의 생산포장재에는 적요되지 않음. 포장재 판매 경과기간도 요구된다.

모든 필수여건에 부합하는 포장재 시장의 규정제정시기는 월표준이 적절한 표준화 기구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그러나 국가표준의 확인검증방법에 대한 규정은 지체없이 적용해야 한다.

유럽규격의 필수요구사항이 관련문제에 대한 준비작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동 지침에서 부여하는 각종 조치사항은 복구, 재활용 및 재활용 포장재 시장판로의 개척을 포함하고 있음. 포장재로서의 재활용 원자재의 함유물에 위생, 보건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역내차원의 정보는 동 지침의 목적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포장 및 포장상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분배에 포함된 모든 사항으로 보아 포장은 점차 폐기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며, 오염자 부담원칙과도 일치하게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 제시된 각종 방법의 개발 및 이행은 공동책임의식하에 활용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행동이나 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75/442/EEC 에 이어 폐기물관리계획에서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수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동 지침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것이며, 동 지침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회 및 회원국은 신보수주의를 피하고 조약내용의 범위내에서 경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회원국은 이러한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도입코자하는 수단의 초안을 위원회에 통지해서 동 지침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보해야 한다.

포장확인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한 형태의 과학적, 기술적 진보는 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동 지침집행시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조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위원회의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 1조 (목적)

1. 동 지침은 모든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제3국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환경 영향을 예방, 축소하여 궁극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역내시장의 역할을 보장하는 한편, 아울러 EC역내의 무역장벽과 경쟁왜곡 및 경쟁제한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별국가 차원의 제반조치를 조화시키는데 있다.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 지침은 최우선순위로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차적으로는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및 복구를 통하여 포장재를 재사용하고, 추후에는 폐기물의 최종 투기를 감축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 2조 (대상)

1. 동 지침의 적용대상은 사용원자재와 관계없이 산업, 상업, 일반사무실, 상가, 서비스, 가정용 등 기타 어떤 단계에서 사용 혹은 방출되는 것을 불문하고 EC시장내에 존재하는 모든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이 규제대상이 된다.

2. 동 지침은 포장제품의 안전, 보건, 위생과 같은 포장에 대한 현행의 품질요건, 운송요건 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협의회 지침(91/689/EEC, 1991. 12. 12)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제 3조 (정의) 동 지침의 목적을 위하여

1. 포장이란 원료에서 가공제품, 생산자에서 사용자나 소비자까지 상품의 봉인, 보존, 인도, 제공을 위하여 특정한 성질을 가진 특정물질로 만든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수 불가능품목도 포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포장은 다음으로 구성되는 바,

(a) 판매포장 혹은 1차포장

구매시점에서 최종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단위를 이루도록 고안된 포장

(b) 그룹포장 혹은 2차포장

구매시점에서 최종소비자 또는 소비자에게 몇 개의 판매단위가 그룹화되는 것인데 최종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제품의 판매시점에서 상품진열대에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제공되도록 고안된 포장으로 이는 상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품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 운송포장 혹은 3차포장

다량의 상품을 취급 또는 운반하는데 물리적 처리 및 운송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판매단위 혹은 그룹포장의 취급 혹은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장을 말한다. 운송포장에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컨테이너는 제외됨.

2. 포장 폐기물

포장 폐기물이란 생산잔재를 제외하고 75/442/EEC 지침에서의 폐기물의 정의를 포괄하는 모든 포장 및 포장재를 의미한다.

3. 포장 폐기물 관리란 75/442/EEC 지침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의미한다.

4. 방지란 다음과 같이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그의 양의 감축을 의미하는데,

-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원자재 및 구성분
- 생산공정, 판매, 분배, 사용,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특히 청정생산 및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5. 재사용이란 포장이 수명주기내에서 최소한의 유통 혹은 회전주기가 달성하도록 고안되거나 인식되어 왔으며, 당초 생각했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제품의 보충원조 유무에 관계없이 포장에 채워져 시장에 출현하고 이와 같이 재사용된 포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포장 폐기물로 될 것이다.

6. 복구란 75/442/EEC 지침에 부속 II.B에서 제공한 어떤 형태의 적용가능한 작업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초기목적 혹은 에너지복구를 제외하고 유기적 재활용을 포함한 다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폐기물의 생성과정에서의 재생공정을 말한다.

8. 에너지 복구란 열의 복구와 더불어 다른 폐기물과 같이 혹은 다른 폐기물을 제외하고 직접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단으로 가연성 포장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기적 재활용이란 혼합 혹은 비혼합 처리를 의미한다. 일정한 상태에서 포장 폐기물의 분해성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안정우기 잔류물이나 메탄이 생성된다. 매립방법은 유기적인 재활용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10. 처리란 75/442/EEC 지침의 부록 II.A에서 제시된 적용가능한 작업을 말한다.

11. 포장관련 경제운용자(Economic Operator)란 포장원자재 공급자, 포장생산자, 운송자, 제품포장자, 사용자, 수입자, 무역업자, 유통업자, 관계당국 및 법정단체 등을 의미한다.

12. 자율협정이란 회원국의 행정기관과 관련 경제분야와의 합의결과 공식협정을 의미하고 동 지침의 목적수행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협정의 제조조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제 4조 (방지)

1. 회원국은 제9조에 의거 포장 폐기물의 형성을 예방하는 조치외에 기타 예방조치도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 운용자의 자문을 통해 채택된다면 그러한 기타 예방조치들은 국가적 프로그램 또는 그에 적합한 유사한 조치를 구성할 것이며 예방에 관한 한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시책을 수집,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예방조치는 제1조(1)에 규정된 대로 동 지침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0조에 의거, 적절한 유럽규격개발을 권장하여 예방조치를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 5조

회원국은 EU 조약과 일치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 재사용제도를 권장할 수 있다.

제 6조 (복원 및 재활용)

1. 동 지침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회원국은 각자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동 지침공포일로부터 5년이내에 국내법을 제정, 집행해야 하는데 포장 폐기물을 중량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65%까지 복구해야 한다.

(b) 위의 일반목표와 동 기간내에서 포장 폐기물에 함유된 중량기준 전체포장재질 중 최소 25% 최대 45%사이에서 각 포장 재질별로 중량기준 최소 15%까지 재활용되어야 한다.

(c) 동 지침 공포일로부터 10년내에 국내법으로 제정, 집행해야 하는 바, 포장 폐기물의 일정 비율을 복구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하는 바, 동 비율은 (a)와 (b)에서 언급한 목표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하여 3 (b)에 의거, 협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2. 상기 조건에 도달한 회원국은 포장 및 기타 제품제조를 위해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로부터 획득한 원자재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3. (a) 유럽회의와 협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상의 1 (a)에서 언급한 날로부터 4년간 1 (a)와 (b)에서 규정된 목표와 목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내에서 얻어진 실제적인 경험과 환경균형과 같은 과학적 조사 및 평가기법의 연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b) 협의회 지침 1. (a)에서 언급한 1단계 5개년 만료시한 6개월전에 적법한 다수 및 집행위 제안으로 수행되고 협의회는 1. (c)에 언급된 2단계 5개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추후에도 매 5년마다 반복된다.

4. 1. (a)와 (b)에서 언급한 조치 및 대책은 각 회원국이 공시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경제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보캠페인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5.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자국의 특수상황 즉, 많은 섬, 농촌·산간지대 그리고 포장재 저소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동 지침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 1. (a), (b)에서 설정된 목표보다 낮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 25%는 복구해야 한다.

(b) 동시에 1. (a), (b)의 목표달성 기한도 1. (a), (b)의 목표시한 보다 연장할 수 있으나 2005. 12.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6. 1의 (a), (b)에서 제시한 재활용 및 복구목표를 초과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추진해 온 회원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예방을 위하여 상기 목표를 초과하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국의 조치도 역내시장 왜곡을 회피하고 다른 회원국이 동 지침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제 7조 (반환 수집 및 복구제도)

1. 회원국은 체제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채택하여 다음 사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a) 소비자 기타 최종소비자로 부터 사용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반환 또는 수거 혹은 이를 전달하기 위한 폐기물 흐름에서부터 가장 적절한 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안까지 강구

(b) 수집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을 포함한 재사용 및 복구

동 지침에 규정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분야별 경제운용기와 법적 공익기관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하며 동 제도는 역외국제품의 역내진입을 위한 세부협정 및 관세부과를 포함하여 무차별 조건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EU조약에 의거 무역장벽 및 경쟁왜곡을 제거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1에서 언급한 조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포

괄하는 정책의 한 분야를 형성해야 하며, 특히 환경보호, 소비자 보건, 안전, 위생에 관한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포장내용물 및 사용원자재의 품질보호, 진실성, 기술특성, 산업 및 상업재산권 보호 등

제 8조 (포장표시의 식별제도)

1. 협의회는 EU조약에 규정된 제반조건에 의거, 동 지침의 효력일로 2년이내에 포장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2. 재활용 및 포장을 포함한 수거, 재사용, 재생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질의 특성에 관한 산업별 분류·식별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동 지침 효력발효 후 12개월이내에 제21조 및 Annex I에 의거 식별제도에 근거한 번호부여 및 약어를 정하고 어떤 재질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식별제도를 준수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3. 포장은 포장자체 혹은 라벨로 적절한 표시를 보유해야 한다. 그 표시는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개봉할 때를 포함해서 적절한 견고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9조 (필수 요구사항)

1.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로부터 3년후 포장이 Annex II를 포함한 동 지침에서 규정된 모든 필수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유통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2. 제22조 (1)에서의 발효일(1996. 6. 30)부터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부합하는 포장에 대해 Annex II를 포함한 동 지침의 모든 필수요건을 준수할 것을 예상해야 함.

(a) 관련 조화 표준에 부합, 이의 참고번호는 EU관보(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공표되었다. 회원국은 이와같은 조화표준을 전환시킬 국가표준 참고번호를 공표해야 한다.

(b) 이런 표준을 커버하는 영역에 관한 한, 제3장에서 언급된 관련국가표준과 어떤 조화된 표준도 공존하지 않는다.

3. 회원국은 2조 (b)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표준내용을 집행위원회와 의견교환 하여야 하는데, 동 조에서 언급한 요건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내용을 모든 회원국에 제시해야 하며 회원국은 표준지침을 공표

하고 집행위원회는 EC관보에도 공표해야 한다.

4. 2에서 언급한 표준이 1에 언급한 필수요건을 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집행위원회 및 관련 회원국은 EEC지침(83/189/EEC)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 동 사실을 제기하고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와 3에서 언급된 표준지침의 공표철회 여부를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표준화)

집행위는 Annex II에서 언급한 필수요건과 관련, 유럽표준의 제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집행위는 특히 다음과 관련한 유럽표준제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 포장재 수명주기 분석기준 및 방법
- 포장에서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존재여부 및 포장, 포장 폐기물 투기측정을 입증하는 방법
- 적절한 포장을 위해 포장 중 재활용 물질의 최소함유량 기준
- 재활용법을 위한 기준
- 포장표시 기준

제11조 (포장재에 함유한 중금속 농도)

1. 포장 및 포장성분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총농도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 (1)에 언급한 날로부터 2년까지 중량기준 600ppm
- 제22조 (1)에 언급한 날로부터 3년까지 250ppm
- 제22조 (1)에 언급한 날로부터 5년까지 100ppm

2. 1에서 언급한 농도수준은 EEC지침(69/493/EEC)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유리가 함유된 포장재는 적용할 수 없다.

3. 집행위원회는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상기 기준농도가 폐쇄 및 통제된 연쇄 상태인 재활용 원자재 및 생산회로에는 적용하지 못할 경우
- 1의 3번째 행에서 언급한 요건에 제외된 포장 형태

제 12조 (정보제)

1.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

축되지 않은 회원국은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동 지침에서 규정한 목표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호환성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이와 같은 취지로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에서 포장의 크기, 특성, 개발과정 및 포장 폐기물의 유통(포장 원자재의 유독성, 위험전보 및 제조과정에서의 사용 원료)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작성자료의 특성과 표시를 조화시키고 회원국간 자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은 제21조의 절차에 의거, Annex III을 기초로하여 동 지침의 효력일로부터 1년내에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양식(format)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회원국은 상세한 정보제공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5. 확보된 자료는 제17조에 언급한 국가보고서에 활용해야 하며 추후 보고서에 갱신해야 한다.

6. 회원국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뢰성있는 정보를 관할기관이 관련 모든 경제운용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13조 (포장사용자를 위한 정보)

회원국은 제22조(1)에서 언급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소비자를 포함한 포장사용자가 다음에서 분야에서의 필요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활용가능한 회수, 수거, 복구제도
-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복구,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 현재 거래되는 포장재의 표시의미
- 제14조에서 언급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을 위한 적절한 관리 계획 요소

제 14조 (관리계획)

동 지침의 목적과 각종 조치에 따라 회원국은 EEC지침(75/442/EEC)제17조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관리계획에 제4조 및 제5조의 조치를 포함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조 (경제조치)

EU조약이 관련조항에 의한 업무수행시 협의회는 동 지침의 목표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조치를 채택한다. 그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회원국은 위원회 환경정책을 지해하는 원칙, 즉, 오염자 부담원칙 및 여타 조약상 의무사항과 일치하도록 목적이행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 16조 (통지)

1. EEC지침(83/189/EEC)을 공정하게, 그러한 경제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은 동 지침의 기본틀내에서 채택코자 하는 조치의 초안을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는데 재정적 본질의 수단을 제외하되 재정적인 조치와 연결된 기술상의 세부항목을 포함하는데 후자는 각 사례에서 위의 지침하에서 절차를 수행하는 현존규정의 관점에서 이를 검증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2. 만약 제안된 조치가 EEC지침(83/189/EEC)의 의미내에서의 기술적 사항이라면 관련 회원국은 동 지침에 언급된 통지절차를 따를 때, 통지가 EEC지침(83/189/EEC)과 동등하게 유효한 것임을 의미한다.

제 17조 (보고의무)

회원국은 1991.12.23일 협의회 지침(91/692/EEC)제5조와 일치하도록 환경관련 지침의 이행에 관한 표준화 및 합리화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보고서에는 1995년-1997년까지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조 (시장진입 자유)

회원국은 동 지침을 만족시키는 자국의 포장시장에의 진입을 방해할 수 없다

제 19조 (과학적 기술적 발전의 적용)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정할 부분, 즉, 인식제도(identification system)- 제8조 (2) Annex I 및 제10조 마지막행 관련 및 데이터 베이스 관련양식 - 제12조 (3)과 Annex III- 은 제21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제 20조 (특별조치)

1. 집행위원회는 제21조의 절차에 의거, 동 지침을 적용

함에 있어서 특히 의약품 및 의약품의 1차 포장, 소규모 포장, 사치품 포장관련 애로사항의 처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안사항이 적합하다면 채택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보고서도 유럽의회 및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위원회 절차)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집행위원회 대표가 의장직을 맡게 된다.

2. 집행위원회 대표는 취할 조치의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안의 언급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시한내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동 의견은 협의회가 집행위의 제안을 채택하도록 요청받는 결정사항인 경우 EU조약 148(2)에서 규정한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내의 회원국 대표의 투표는 EU조약의 조항에 정해진 대로 비교검토해야 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3. (a) 집행위원회는 상기 조치가 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예상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b) 만약 예상조치가 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별도 의견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집행위는 지체없이 동 조치와 관련한 제안을 협의회에 제안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 실행하지 않는다면 제안된 조치는 집행위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제 22조 (국내법으로 집행)

1. 회원국은 1996.6.30일까지 동 지침에 부합한 법규, 규정, 행정지침을 시행해야하며, 이의 개별 법규는 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회원국이 동 조치를 채택할 때, EU포장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 발표시에도 그러한 언급을 수반해야 한다. 언급방법은 회원국들이 정해야 한다.

3. 또한 회원국은 동 지침범위내에 채택한 모든 법률, 규정, 행정조치를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4. 포장생산을 위한 제 요건이 동 지침 발효일 이전 제품에 사용된 포장에는 결코 적용할 수 없다.

5. 회원국은 현행지침 발효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시일이전에 제조된 포장의 시판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내 현행법과 일치해야 한다.

제 23조

지침 85/339/EEC는 제22조 (1) 에서 제시한 일자로 변경된다.

제 24조

동 지침은 EU판보 발행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25조

동 지침은 회원국에 송부된다. (1994. 12. 20이런 브뤼셀에서 시행된다.)

유럽의회 의장 집행위원회 위원장
K. HANSCH K. KIKEN

[부 록 1] 확인체계

사용번호는 플라스틱은 1에서 19, 종이 및 판지는 20에서 39, 금속은 40에서 49, 나무(목재)는 50에서 59, 섬유는 60에서 69, 유리는 70에서 79이다.

확인체제는 관련물질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물질은 번호체계 및 (혹은)약어로 확인될 수 있다. 확인표시는 상호마크의 위 혹은 아래에 포장재의 재사용 혹은 복구가능 특성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비망록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유럽의회 및 심의회(Council) 지침 (94/62/EC)은 1994. 12. 20일에 채택, 12. 31일에 공고되었으며, 1. 31일부터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O. J 1994 L365/10)

동 지침의 목적은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국내법과 조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의 전략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그 폐기물의 재사용, 복구,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부록1)

포장은 판매(1차)포장, 그룹(2차)포장 및 운송(3차)포장이 있으며 포장폐기물이란 투기 혹은 사용포장을 말하며 포장에 관한 심의회 지침(75/442/EEC)을 참고하여 정의된

다. (O.J. (1975)L194/1)

회원국은 새로운 포장이 시장에 시판되는 제반조건을 통제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1996. 6. 30일 이후 회원국들은 만약 포장이 EC역내 국가 기준과 조화되고 개별국가 표준에 부합한다면 필수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1997. 12. 30일부터 포장은 포장의 최소기준을 설정한 Annex II 를 포함하여 동 지침의 모든 필수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시판될 수 있다. (제9조)

조화된 표준은 Annex II 에서 설정한 필수표준을 이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의해 촉진시켜야 한다. 필수표준은 수명주기분석, 위험물질, 포장재질내용, 복원방법과 관련을 갖게 된다. 폐기물 감소를 위한 중장기 특수 목표가 설정된다.

2001. 7. 30까지 적어도 폐기물의 50%(최대 65%)가 복구되어야 하며, 이중 적어도 절반이 재활용 처리되어야 한다. (재활용은 합성을 포함하여 대부분을 복구형태를 포함하나 조각에 의한 에너지복구는 제외함. 복구에서 매립처리는 제외됨)

협의회는 2006. 6. 30일까지 복구 및 재활용해야 할 폐기물의 양에 대한 장기목표를 수립하되 중기목표에 실질증가를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회원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국별 조치가 경쟁

을 방해하고 여타 국가가 동 지침의 준수가 곤란하지 않다면 설정한 최대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25%의 중간목표를 적용해도 무방하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50%를 달성해야 한다. 회원국은 무차별 조건으로 외국운용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경제운용자에게 개방할 사용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수거 및 반환 시스템을 작성하되, 동 제도는 경쟁왜곡 및 장벽을 초래해서는 안됨.

협의회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표시 및 재질증명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1995년 말까지 집행위원회는 서로 다른 포장재질에 고유번호 부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표시 및 번호는 수거, 재사용, 복원 및 재활용되도록 포자에 용이하게 표시해야 한다.

포장에서 사용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은 2001. 6. 30일까지 점차 축소해야 한다(제11조)

회원국은 포장 사용자 특히 소비자가 관련 폐기물 관리계획, 제품표시, 회수, 수거, 복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정보의 의사소통 및 지침이행 및 역할을 감시하기 위한 관련조항이 있다.

집행위원회와 위원회의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추천 보증 이용안내

한국골판지 포장공업협동조합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협동조합추천보증」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및 사업성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시 당 조합의 추천을 받으면 간편한 신용 및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기업 : 우리조합 회원중 사업성과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추천금액 : 2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준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서 발급시 : 인감증명서

■비조합원사는 조합가입 3개월 경과후 추천가능

■문의 : 우리조합기획정책부 (02-594-0381)

한국골판지포장협동조합

이사장 류 종 우